

서 약 서

본인은 「항공안전법」 제13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에 의하여 항공영어구술능력 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, 관련 규정에 따라 신의·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공정하고 철저하게 임하도록 하겠으며 「항공안전법」 제135조제7항의 규정을 숙지하였음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서 약 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또는 평가기관장 귀하